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'별표2'를 '별표1'로 하고 '별표4'를 '별표2'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5조 제2항중 '별표5'를 '별표3'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